

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12. 26.] [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, 2025. 12. 26., 타법개정]

기후에너지환경부 (녹색전환정책과) 044-201-6689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1. 26.]

제2조 삭제 <2002. 9. 11.>

제3조 삭제 <2015. 6. 15.>

제4조(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)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 다만,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 6. 15., 2025. 10. 1.>

[전문개정 2010. 11. 26.]

제5조(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결과의 기록·관리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, 디스켓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·저장·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4. 2.>

[전문개정 2010. 11. 26.]

제5조의2(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)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,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2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11. 26.]

제6조(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)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 11. 26.]

제7조(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)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 11. 26.]

제8조 삭제 <2015. 6. 15.>

제9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[본조신설 2014. 4. 30.]

제10조 삭제 <2007. 6. 7.>

제11조 삭제 <2007. 6. 7.>

제12조 삭제 <2007. 6. 7.>

제13조 삭제 <2007. 6. 7.>

제14조 삭제 <2007. 6. 7.>

부칙 <제13호, 2025. 12. 26.>(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